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24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5.

발 의 자 : 정희용 · 이소희 · 강대식
고동진 · 박준태 · 주호영
배준영 · 김종양 · 김용태
박충권 · 최수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내국인에 대하여 기업규모 및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따라 차등화된 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유인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·장애인·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기업 규모 및 증가 인원 유형별로 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원씩 상향하여 고용창출 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

9조의8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8제1항제1호가목 계산식 중 “700만원”을 “800만원”으로, “1000만원”을 “1100만원”으로, “1600만원”을 “1700만원”으로, “1900만원”을 “2000만원”으로, “1700만원”을 “1800만원”으로, “2000만원”을 “210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계산식 중 “500만원”을 “600만원”으로, “900만원”을 각각 “100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계산식 중 “300만원”을 “400만원”으로, “500만원”을 “60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인원 수(이하 이 조에서 “최소 고용증가인원수”라 한다)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,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1. 청년 정규직 근로자, 장애인 근로자,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 “청년등상시근로자”라 한다)의 증가 인원 수(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
가. 중소기업의 경우: 다음
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

$$A + B + C$$

A: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
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(해당 과
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

[illegible][illegible]

가. _____

$$A + B + C$$

A: -----

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
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.
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대한 금
액

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
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× 700만
원(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
경우 1,000만원)

B: 전전 과세연도(2024년 12월 31
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
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대
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
원 수(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
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
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
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
등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
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대
한 금액

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
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× 1,600
만원(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
한 경우 1,900만원)

C: 전전전 과세연도(2024년 12월 3
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
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
인원 수(해당 과세연도, 직전 과
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
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

--

----- × 800만
원-----
----1,100만원----

B: -----

----- × 1,700
만원-----
-----2,000만원----

C: -----

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
등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
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대
한 금액

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
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$\times$ 1,70
0만원(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
가한 경우 2,000만원)

* A,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
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
금액은 0으로 본다.

----- $\times$ 1,80
0만원-----
-----2,100만원-----

* -----

-----.

나. 중견기업의 경우: 다음
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
액

나. -----

--

A + B + C

A: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
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
금액

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
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$\times$ 500만
원

B: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
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
금액

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
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$\times$ 900만
원

C: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

A + B + C

A: -----

----- $\times$ 600만
원

B: -----

----- $\times$ 1,000만
원

C: -----

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
금액

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
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× 900
만원

* A,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
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
금액은 0으로 본다.

----- × 1,000
만원

* -----

-----.

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:
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
한 금액

다. -----

A + B

A: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
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
금액

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
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× 300만
원

B: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
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
금액

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
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× 500만
원

* A 또는 B의 계산식에 따라 계
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
금액은 0으로 본다.

A + B

A: -----

----- × 400만
원

B: -----

----- × 600만
원

* -----

-----.

2. · 3. (생 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⑨ (생 략)	② ~ ⑨ (현행과 같음)